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. 5. 15 선고 2018가단1910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2019. 5. 1.

판결 선고2019. 5. 1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흥시 G 대 5,403.6㎡ 중 원고의 지분 5,403.6분의 32.8137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6. 5. 17. 접수 제518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가. 피고 D, F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B, C, E :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최미영

별지